

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(미추홀구)

□ 민원 제목 : 건설기계[덤프트럭] 차고지 설치 등 대책마련 요청

□ 신청 취지

- 건설기계(덤프트럭) 차고지 설치 등 대책마련 후 밤샘주차 단속 요청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미추홀구에는 주기장(건설기계 주차장)이나 화물공영차고지가 없는 실정임.
 - 덤프트럭 차주로서 퇴근 후 주거지 인근에 덤프트럭을 주차하고 있으나, 밤샘주차로 인하여 단속을 당하고 있음.

□ 관계 법령 등

-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(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)
 - 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4.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서
-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(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)
 -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·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□ 판단 및 결론

- (건설과)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, 영업용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건설기계대여업체를 등록해야하며, 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건설기계 대수에 대한 주기장 소유권 및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. 따라서 영업용 건설기계는 대여업체가 소유 혹은 사용하는 주기장을 이용하는 것이 맞아 보이며,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불가피 함.
- 건설기계의 주기장 확보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나 주기장 확보를 주거지 인근이 아닌 도심 외곽지 등으로 정하는 것은 도심 지역 여건 상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사료, 따라서 건설기계 불법주차 지도단속 추진계획에 의거 충분한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고 미추홀구 자체 주기장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킴이 타당.

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(미추홀구)

□ 민원 제목 : 거주지 주변 공개공지 및 무인카페 흡연

□ 신청 취지

- 거주지 주위 조성된 공개공지 및 무인카페에서의 상습 흡연 발생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해결 요청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▲▲▲▲ 오피스텔 옆 공개공지에 상습 흡연이 발생하여 관리인 등 흡연단속을 약속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았으며, 보건소에서 설치한 흡연금지 현수막도 훼손되어 보이지 않음.
- 집 앞 무인카페 및 야외 테이블에서 상습흡연 및 야간에 단체로 모여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.

□ 관계 법령 등

-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(금연구역 지정 등)
 -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
 - 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 구역
 - 3.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
 - 4.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
 - 5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에 따른 주유소
 - 6.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

- 7.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
- 8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
- 9.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□ 판단 및 결론

- 현재 우리 구 조례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중 공개공지는 해당되지 않으며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.
-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공개공지 금연 구역 지정을 선행한 타 지자체의 경우, 소유주의 3분의 1(또는 2분의 1)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공개공지 소유의 2분의 1 이상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할 시 적극 검토 예정
- 무인카페 영업주에게 민원 내용을 전달하여 금연 안내문 부착 및 테이블 철거 예정이며, 야간에는 금연지도원을 배치하여 계도 활동 예정